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제작자율성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672호)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27호)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787호)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01호)
- 박민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39호)
- 노종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40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01호)
- 김 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50호)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50호)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16호)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63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56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총괄	15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의 경과	15
2. 과방위 의결대안과 재의요구의 주요내용	17
3. 개정안별 주요 개정사항 비교	20
IV. 제작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관련	28
1. 편성위원회 설치근거,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 신설 등	28
2. 시청자위원회 관련 사항	43
3. 직원 임명동의제	54
V.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57
1. 한국방송공사 이사 증원 및 추천주체 변경·확대	57
2. 사장후보추천위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69
3. 이사 및 사장의 자격·임기,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	75
VI. 별칙	92

I . 제안경위

【한민수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8.
다. 회 부 일 : 2024. 12. 19.

【최민희의원안】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19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박민규의원안】

가. 발 의 자 : 박민규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3.
다. 회 부 일 : 2024. 12. 24.

【조인철의원안】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4.
다. 회 부 일 : 2024. 12. 26.

【이해민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12. 31.
다. 회 부 일 : 2025. 1. 2.

【김우영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5. 1. 6.
다. 회 부 일 : 2025. 1. 7.

【이훈기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22인
나. 발 의 일 : 2024. 12. 19.
다. 회 부 일 : 2024. 12. 20.

【황정아의원안】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0.
다. 회 부 일 : 2024. 12. 23.

【노종면의원안】

가. 발 의 자 : 노종면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3.
다. 회 부 일 : 2024. 12. 24.

【김 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7.
다. 회 부 일 : 2024. 12. 30.

【이정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 3.
다. 회 부 일 : 2025. 1. 6.

【서영교의원안】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 8.
다. 회 부 일 : 2025. 1.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민수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장의 선출방식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이훈기의원안】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해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안 제46조 등).
- 나. 한국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추천된 사람 중에서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등).
- 다.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최민회의원안】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황정아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

【박민규의원안】

현행법에서 한국방송공사의 11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노종면의원안】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조인철의원안】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11명 이사 모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있는 바, 이사회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운영과 사장의 임명제청에 있어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제46조의2 신설).

【김현의원안】

한국방송공사는 국가기관방송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공영방송임에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해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여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7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과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의2).

【이해민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종사자 연합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대통령은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방송통신위원회의 후견주의를 배제하고 오로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이양 받은 국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선임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사장의 선임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방송편성규약 준수 여부를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4조제4항, 안 제17조제3항 제6호 신설).
- 나.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46조제2항).
- 다. 국회는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의장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6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국회의원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함(안 제46조제3항).
- 라. 이사회는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감사의 임면제청, 이사의 해임제청,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 바.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50조제7항 신설).
- 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이정현의원안】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공사에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립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및 제50조의2 신설).

【김우영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 및 집행기관(사장·감사·부사장 등)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담보, 이사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6호 및 제7호).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이사

는 국회 교섭단체, 학회, 시청자위원회, 공사 소속 직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추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사장의 면직제청은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단서 신설).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사. 이사의 자격요건을 신설함(안 제46조의2 신설).

아. 이사회의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시청자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자.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을 위하여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차.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안 제53조의2 신설).

카.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시청자위원 구성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안 제87조제1항).

타.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106조).

【서영교의원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사 및 공사의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함(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바. 이사회 기능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반영하여 150명 이상 200명 이내의 홀수로 공개모집으로 구성되는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의 운영, 독립성, 지원 등에 관한 규정과 평가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 및 평가위원회의 후보자 평가 절차와 이사회 후보자 추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아. 이사 및 집행기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에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에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

차.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일부 확대함(안 제88조제1항).

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9조제4항).

타.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6조).

Ⅲ. 총괄

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의 경과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방송관계법안”) 대안 3건이 제21대 및 제22대 과방위 및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음.

제21대	제22대
(’22.12.2.) 과방위 전체회의 대안의결	(’24.6.18.) 과방위 전체회의 대안의결
(’23.4.28.) 본회의 부의	(’24.6.25.)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23.11.9.) 본회의 의결	(’24.7.28.) 본회의 의결
(’23.12.1.) 정부재의요구	(’24.8.13.) 정부재의요구
(’23.12.8.) 본회의 재의결 결과 부결	(’24.9.26.) 본회의 재의결 결과 부결

□ 제21대 국회에서의 방송관계법안 세부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2022.11.29. 과방위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 방송관계법안 대안 3건 의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청원 1건(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¹⁾을 통합하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제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²⁾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³⁾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

2022.12.1.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및 대안가결

2023.1.16. 법사위, 상정 및 제2소위 회부

- 법사위 제2소위에서 2차례 심의(2023.2.22., 2023.4.19.)

2023.3.21. 과방위,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
- 법사위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 부의요구

2023.4.28.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 부의
- 2023.4.27. 본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가결

2023.11.9. 본회의, 원안가결

2023.12.1.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 제출

2023.12.8. 본회의, 재의결과 부결

□ 제22대 국회에서의 방송관계법안 세부 논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2024.6.18. 과방위, 전체회의 방송관계법안 대안 3건 의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4)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5)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6)을 통합하여 대안 제안

2024.6.25. 법사위, 상정 및 원안가결

2024.7.30. 본회의, 원안가결

2024.8.13.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재의요구서 제출

2024.9.26. 본회의, 재의결과 부결

-
-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 2100365(정청래의원안), 2100407(정청래의원안), 2103346(박성중의원안), 2105248(정필모의원안), 2108457(전혜숙의원안), 2115427(정필모의원안)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2105250(정필모의원안), 2108458(전혜숙의원안), 2115421(정필모의원안)
청원(1건): 2100108(윤창현외 50,000인)
- 2) 2103347(박성중의원안), 2105251(정필모의원안), 2108453(전혜숙의원안), 2115423(정필모의원안)
- 3) 2103365(박성중의원안), 2105249(정필모의원안), 2108462(전혜숙의원안), 2115424(정필모의원안)
- 4) 2200060(정청래의원안), 2200098(이훈기의원안), 2200225(고민정의원안), 2200257(최민희의원안), 2200460(한준호의원안)
- 5) 2200057(정청래의원안), 2200103(이훈기의원안), 2200227(고민정의원안), 2200261(최민희의원안), 2200465(한준호의원안)
- 6) 2200066(정청래의원안), 2200102(이훈기의원안), 2200228(고민정의원안), 2200265(최민희의원안), 2200464(한준호의원안)

2. 과방위 의결대안과 재의요구의 주요내용

- 제21대와 제22대 방송법 대안은 동일하게 ① 한국방송공사 이사회 이사 수 확대(11명→21명), ② 추천주체 다양화, ③ 사장추천위 구성을 통한 사장후보 추천과 ④ 이사회의 사장임면제청에 있어서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 첫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 대해 현행법은 11명의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안은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추천주체를 다양화하여 각 주체의 추천을 받아 방통위가 임명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둘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장추천위”)에 대해서 현재에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대안은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셋째,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서는 현재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안은 사장추천위가 3명 이하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해당 후보자를 이사회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음.

- 넷째, 제21대 대안과 비교했을 때 제22대 대안에서는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면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임기보장 규정을 추가하였음.

<KBS 지배구조 관련 21·22대 과방위 의결 대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제21대·제22대 과방위 의결 대안
이사회 구성	○ 이사 수 11명 ○ 이사 임명절차 - 방통위 추천 → 대통령 임명	○ 이사 수 21명으로 확대 ○ 이사 임명 절차 - 각 주체 추천 → 방통위 임명제정 → 대통령 임명 ○ 추천주체 다양화 △국회(5)(교섭단체 의석수 비율),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 △시청자위원회(4), △방송기자연합회(2), △한국피디연합회(2),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2) ※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방통위가 선정하며, 지역 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을 포함
사장 임면	○ 사장 임명절차 - 이사회 임면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 사장 임명절차 - 사장후보국민추천위(100명) 구성 → 추천위, 사장후보자 추천(3명 이하 복수) → 이사회 임면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 이사회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2/3찬성(특별다수제)로 결정하며,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 사장 임기보장(제22대 대안만 해당) - 결격사유, 회계부정 등 제한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

-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존 21대 국회에서의 각 당의 입장과 대통령의 재의요구사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기존 과방위 의결 대안에 대한 주요 쟁점>

쟁점	21대 국민의힘 입장	21대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요구사유('24.8)
이사 수 증원	- 21명 증원은 과도 - 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는 15명 이내 원칙	- 다양성 확보 위해 증원 필요	
이사 추천 주체	- 추천 주체 대부분이 親민주당 성향	- 다양한 기관에 추천 권을 할당하여 정치 권 영향력 축소 필요	- 이사회에의 편향적 구성 우려 - 공사의 경영을 견제· 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 이사회에의 견제·감시 대상인 직능 단체가 추천 주체에 포함 - 민주적 정당성 없는 단체가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침해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와 대의민주주의 원리, 권 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사장추천위 구성방식	- 사장추천위 구성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 여 영향력 행사 가능	- 공영방송 사장을 국 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 역 등을 고려	-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 →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추천위 구성·운영 및 사 장 인사 초래 위험
사장 임명· 선임 절차	- 현행 방식 선호	- 사장 선출에 국민 참 여 보장	
사장 임기보장		- 임기보장을 통해 독 립성 및 합리적 운영 보장	- 대통령의 임명권 제약, 공사의 공적책임 실현 에 지장 초래

※ 이외에도 대통령 재의요구에는 ‘입법과정에서의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미래지향적 공영방송 개편 필요성’ 등의 사유가 적시되었음

3. 개정안별 주요 개정사항 비교

- 12건의 동 개정안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및 공정성 실현 등을 제언 이유로 하여, ①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제작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관련 부분, ②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선임과 관련된 법적 절차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위와 같은 구분에 따라 각 개정안의 개정사항에 대한 대략적인 비교를 진행하며, 검토의견 또한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겠음.

가. 제작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관련

-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이해민·노종면·김우영·서영교 의원안 등 4개 개정안이며,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중 제작 자율성, 시청자 권익 관련 내용>

개정조문	개정내용
제2조(정의)	○ “종사자” 정의규정 추가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규정 - 종편·보도전문 방송사업자 - 이해민·김우영의원안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보도전문PP - 서영교의원안 ○ 편성위원회의 역할 규정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개정조문	개정내용
<신설> 제4조의2	○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의결사항 등 규정 - 종편·보도전문 방송사업자 - 김우영의원안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보도전문PP - 서영교의원안
제17조 (재허가 등)	○ 재허가·재승인 심의 대상 추가 - 방송편성규약 준수·이행 여부 - 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 - 편성위원회 설치·의결사항 준수 여부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52조 (직원의 임면)	○ 일부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 - 노종면의원안
제87조 (시청자위원회)	○ SO,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 편성위원회의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규정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SO, 위성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의 권한 확대 - 서영교의원안 - 이용요금·약관, 채널 구성·운용에 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방발기금 제작지원근거 마련 - 서영교의원안
제90조(방송사 업자의 의무)	○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시정요구 수용의무 추가 - 서영교의원안
106조(벌칙)	○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 미준수 관련 -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공표·준수 등의 위반 관련 - 편성위원회 미구성, 심의·의결 미이행 등 관련 - 의사회 회의(록) 비공개, 이사·집행기관의 정치활동 관여 등 관련

□ 제작 자율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해민·노종면·김우영·서영교의원안 등 4개 개정안이 해당됨.

○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편성위원회의 설치 의무화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등의 내용을 추가하

고 있으며, 이해민의원안은 편성위원회 없이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상 사업자 및 의무사항) 개정안에 따르면 △이해민·김우영의원안은 종편·보도전문 방송사업자, 서영교의원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편·보도전문PP에 대해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편성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하고 있음(안 제4조).

- (편성위원회의 역할)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공표, 준수,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안 제4조의2 신설),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3항),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공표(안 제4조제4항)하도록 하고 있음.

○ (임명동의제) 노종면의원안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안 제52조제2항).

□ 시청자 권익과 관련 내용으로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이 있음.

○ (시청자위원회)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SO,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 위원은 편성위

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87조).

- (권한 확대) 서영교의원안은 SO, 위성방송사업자에 설치하는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요금이나 채널구성·운용 등에 대해 의견제시·시정요구를 하고(제88조), 해당 방송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음(제90조).

□ 의무사항에 대한 구속력 확보수단을 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 (재승인·재허가) 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대상에 방송편성규약의 준수·이행 여부나 편성위원회의 설치·의결사항 준수 등에 대한 여부를 추가함(안 제17조).
- (벌칙)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벌칙규정 개정을 통해 방송편성책자 선임, 방송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관련 의무의반, 이사회회의(록) 비공개, 이사·집행기관의 정치활동 관여 등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있음(안 제106조)

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12개 개정안이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중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내용>

개정조문	개정내용
제46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	○ 이사정수 및 이사 추천주체 변경 - 13인(한민수·이훈기·최민희·박민규·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 - 15인(황정아·노종면의원안) ○ 이사회 의결사항 중 특별다수제 도입 - 사장 임명제청(한민수·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노종면·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의원안) - 이사 해임제청(이해민의원안) - 사장 면직제청(김우영의원안) ○ 이사 임명기한(14일이내) 및 임명간주 신설 - 김우영의원안 ○ 사장임명제청 결선투표 규정 - 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정현의원안 ○ 이사회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 등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신설> 제46조의2	○ 이사 자격요건 신설 - 이훈기·조인철·김우영의원안
제47조 (이사의 임기)	○ 연임 제한(1회)규정 신설 -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 이사 결격사유 추가 - 이훈기·조인철·김우영의원안
제49조 (이사의 기능)	○ 이사회 심의사항 중 ‘사장후보추천위 구성·운영’ 추가 등 - 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
제50조 (집행기관)	○ 이사회의 사장임명제청 시한 신설 등 -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 ○ 사장 자격요건 신설 - 이훈기·김우영의원안 ○ 사장 임기보장 신설 - 황정아·노종면·이해민의원안
<신설> 제50조의2 ~제50조의4	○ 사장후보추천위의 구성·운영 등의 규정 신설 - 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 ○ 사장후보추천위 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 -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 ○ 사장임명제청 특별다수제, 결선투표 규정 - 이해민의원안
<신설> 제53조의2	○ 이사·집행기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 신설 -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
106조(벌칙)	○ 의무사항 미준수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 김우영·서영교의원안 -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 미준수 관련 -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공표·준수 등의 위반 관련 - 편성위원회 미구성, 심의·의결 미이행 등 관련 - 의사회 회의(록) 비공개, 이사·집행기관의 정치활동 관여 등 관련

- 동 12건의 개정안들은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하여 「방송법」 제46조 개정을 통해 KBS 이사회의 이사정수 및 이사 추천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다만, 이사정수나 추천주체에 있어서는 개정안별 차이가 존재함.

<현행과 개정안의 이사회 구성방식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내용	
규모	11인	13인	or 15인
선임절차	방통위 추천 (재적위원 과반찬성) ↓ 대통령 임명	각 단체 추천 ↓ 대통령 임명	or 각 단체 추천 ↓ 방통위 임명제청 ↓ 대통령 임명
추천주체	방통위 11인	국회·방통위·공사임직원·학회·시청자위원회 등 다양	
임기	3년	3년	or 3년(1차례만 연임)

- (이사회 정수) 현재 KBS 이사회는 11인으로 구성되며, 한민수 의원안 등 10개 개정안은 이사정수를 13인으로 증원하고, 황정아·노종면의원안은 이사정수를 15인으로 하고 있음.
- (추천주체) 현재는 방통위에서 이사 11인을 모두 추천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방통위, 공사임직원,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변경·확대하고 있으며, 그 수는 1개에서 6개까지로 개정안마다 다양함.
- (임명방식) 현재는 방통위가 추천(재적위원 과반찬성)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한민수·이해민·김우영·서영교 등 4개

개정안은 개별 주체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최민희의원안 등 8개 개정안은 각 개별단체의 추천을 받아 방통위가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사장임명방식**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장후보 추천 방식을 도입하거나, 이사회 특별다수제,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들이 있음.

<현행과 개정안의 사장임명방식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내용			
선임절차	이사회 제청 ↓ 대통령 임명	이사회 제청 ↓ 대통령 임명	or	(사장추천위 추천) ↓ 이사회 제청 ↓ 대통령 임명	or 사장추천위 추천 ↓ 이사회 제청 ↓ 대통령 임명
선임시 이사회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 (6명 이상)	재적 과반	or	특별다수제(2/3)	or 특별다수제(2/3) 결선투표
임기	3년	3년	or	3년(1차례만 연임)	

- (국민참여) 9건의 개정안(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등 국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기구(이하 “사장추천위”)를 통해 사장후보가 추천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 다른 개정안들은 사장추천위를 통한 임명제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최민희·김현의원안은 이를 이사회 자율사항

으로 규정하고 있음.

○ (특별다수제) 11건의 개정안이 이사회 운영에서의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대다수(한민수·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노종면·조인철·김현·이정현의원안)는 사장임면제청에 있어서만 이를 적용하는 반면, 이해민의원안은 사장임면제청 뿐 아니라 이사회 임제청에 있어서도 이를 도입하고, 김우영의원안⁷⁾은 사장 면직제청에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차이가 있음.

○ (결선투표제) 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정현·이해민의원안 등 6건의 개정안은 특별다수제로 인하여 사장 임면제청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결선투표제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음.

□ 기타 이사 및 사장, 집행기관과 관련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음.

○ 이어나 사장의 자격요건·결격사유·연임제한에 대해서 이훈기·조인철·김우영·서영교의원안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이사 및 사장 등 집행기관의 임기보장 등 직무독립과 신분보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이훈기·황정아·노종면·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이 규정하고 있음.

○ 이사회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관련해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이 규정하고 있음.

7) 김우영의원안은 이사회의 의결 없이 평가점수 최고득점자가 임명제청되도록 함.

IV. 제작 자율성 및 시청자 권익 관련

1. 편성위원회 설치근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신설 등: 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방송법」(이하 “법”)에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28호 신설), △방송사업자(김우영의원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서영교의원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PP’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공표, 준수,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안 제4조의2 신설),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안 제4조제3항),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공표(안 제4조제4항)하도록 하고 있음.
- 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면서(안 제4조제4항) △재허가·재승인 시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해민의원안은 방송편성규약 준수사항 이행 여부만을 규정하는 반면,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방송편성규약 준수사항뿐 아니라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제3항).

현행	이해민의원안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 27. (생 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 과 같음)	제2조(정의) ----- ----- ----- -----.	제2조(정의) ----- ----- ----- -----.
		1. ~ 27. (현행 과 같음) 28. “종사자”란 <u>방송사업자에</u> <u>의해 고용되</u> <u>어 방송사업</u> <u>에 종사하는</u> <u>자 중에서 사</u> <u>장, 부사장,</u> <u>감사 등 임원</u> <u>또는 집행기</u> <u>관에 해당하</u> <u>지 아니하는</u> <u>자를 말한다.</u>	1. ~ 27. (현행 과 같음) 28. “종사자”란 <u>방송사업자에</u> <u>의해 고용되</u> <u>어 방송사업</u> <u>에 종사하는</u> <u>자 중에서 사</u> <u>장, 부사장,</u> <u>감사 등 임원</u> <u>또는 집행기</u> <u>관에 해당하</u> <u>지 아니하는</u> <u>자를 말한다.</u>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①·② (생략) ③ <u>放送事業者</u> <u>는 放送編成責</u> <u>任者를 선임하</u> <u>고, 그 姓名을</u> <u>放送시간내에</u> <u>매일 1회 이상</u> <u>公表하여야 하</u> <u>며, 放送編成責</u>	第4條(放送編成의 자 유와 독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第4條(放送編成의 자 유와 독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방송사업자</u> <u>는 제4조의2에</u> <u>따른 편성위원</u> <u>회의 제청으로</u> <u>방송편성책임자</u> ----- ----- -----	第4條(放送編成의 자 유와 독립)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u>방송사업자는</u> <u>제4조의2에 따</u> <u>른 편성위원회</u> <u>의 제청으로 방</u> <u>송편성책임자를</u> ----- ----- -----

任者의 자율적
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
다.

④ 종합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放送프로그램製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製作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放送編成規約을 제정하고 이를 公表하여야 한다.

<신 설>

[illegible]

④

방송프로그램 보도 · 제작
· 편성-----

제4조의2
에 따른 편성위
원회가 방송프
로그램 보도 ·
제작 · 편성 종
사자-----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
성규약을 공표-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와 종사자는 방송편

④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
편성-----보도
에-----전문편
성을-----방
송채널사용사업
자는 방송프로
그램 보도·제
작·편성의-----
-----제4조
의2에 따른 편
성위원회가 보
도·제작·편성
종사자의-----
-----제정 또
는 개정한 방송
편성규약을 공
표하여야-----.

⑤ 지상파방송사
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
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신 설>

성규약을 준수하
여야 한다.

제4조의2(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방송사업
자의 편성위원
회 구성 및 운
영 등) ① 종합
편성 또는 보도
에 관한 전문편
성을 행하는 방
송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편 성 위 원 회 를
두어야 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
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와
종사자의 방송
편성규약 준수
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
보도·제작·편
성의 자율성 침
해에 관한 사항

사용사업자와 종
사자는 방송편성
규약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4조의2(편성위원

회 구성 및 운
영 등) ① 지상
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
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편 성 위 원 회 를
두어야 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
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
송편성규약 준
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②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③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보도·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편성위원회의 위원은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第17條(再許可 등)	第17條(再許可 등)	第17條(再許可 등)	第17條(再許可 등)
①·② (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①·②(현행과 같음)	①·②(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③ ----- ----- ----- -----	③ ----- ----- ----- -----	③ ----- ----- ----- -----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5의2. (생략) <신 설> <신 설> 6. 그 밖에 許可 또는 승인 당시의 放送事業者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생략)	----- ----- -----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또는 개정과 그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 8. (현행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 ----- ----- -----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 및 개정과 그 준수 여부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 (현행과 같음)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는 방송편성책임자 선임을 통한 자율적인 방송 편성을 보장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현행법 제4조제3항⁸⁾은 전체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 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 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제2조제3호⁹⁾에 따라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 용사업자(PP),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말함.

○ 현행법 제4조제4항¹⁰⁾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 해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도록 함.

8)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9) 「방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10)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방송편성위원회에 관련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중앙지상파방송사업자나 주요 종합편성·보도전문PP는 대부분 편성규약에 따라 편성위원회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음.

- 편성위원회는 대체로 사업자(보도·제작·편성 부문 책임자 등) 대표, 종사자(또는 노조) 대표 동수로 구성되며, 일부 방송사(KBS, MBC)에서는 단체협약에 따른 유사 성격의 기구(공정방송위원회 등)가 사실상 편성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함.

□ 개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방송편성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또는 방송편성규약에 대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함.

○ 김우영의원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서영교의원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PP에 대하여,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 준수에 관한 사항, 보도·편성·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

○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또한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방송프로그램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 종사자

의 의견을 들어 제·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이해민의원안**은 편성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사업자에 대해서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이해민의원안**은 방송편성규약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과 그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편성위원회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 동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이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권한이 방송사업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조직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영향에서 방송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같은 맥락에서 방송편성규약의 준수 법적 의무화는 방송제작자들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

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 재허가·재승인 심사항목에 방송편성규약 준수 여부, 편성위원회의 구성, 의결사항 준수 등을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이해민·김우영의원안과 서영교의원안 간 법 적용대상 범위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영교의원안은 이해민·김우영의원안이 대상으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외에 지상파방송사업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EBS와 종교라디오방송이나 국악방송 등의 9개 라디오방송사 등 10개 사업자까지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방송편성규약 준수의무 등이 부여됨.

- 편성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자의 자유로운 운영을 제한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됨.

- 이와 같은 갈등 관계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은 해당 방송사업자에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해민·김우영의원안 적용대상(40개사)			서영교의원안 추가 적용대상(10개사)
종합편성 (37개사)	중앙 지상파방송(3)	KBS, MBC, SBS	※ 종합편성·보도전문 편성사업자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 중앙지상파(1): EBS 라디오방송(9):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경인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악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
	종합편성PP(4)	JTBC, TV조선, 채널A, MBN	
	지역MBC(16)	부산MBC, 대구MBC, 광주MBC, 대전MBC, 전주MBC, 춘천MBC, MBC충북, 제주MBC, 울산MBC, 강원영동MBC, 경남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포항MBC	
	지역민방(10)	부산방송(KNN), 대구방송(TBC), 광주방송(KBC), 대전방송(TJB), 울산방송(UBC), 전주방송(JTV), 청주방송(CJB), 제주방송(JBS), 강원민방(G1), 경인방송(CBS)	
	라디오방송(3)	티비에스,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지상파DMB(1)	YTNDMB	
보도전문 편성 (3개사)	보도전문편성PP(2)	YTN, 연합뉴스TV	
	라디오방송(1)	YTN라디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둘째, 안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와 안 제4조제3항에 따라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간 범위가 달라 조문정리가 필요해보임.

- 안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임.

- 안 제4조제3항은 모든 방송사업자¹¹⁾에 대해서 편성위원회 제

11)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해당됨.

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 및 공표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효과가 있게 됨.

-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취지라면, 현행을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후단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음.

현행	김우영·서영교의원안	수정의견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③ <u>放送事業者는 放送編成責任者를 선임하고, 그 姓名을 放送시간내에 매일 1回 이상 公表하여야 하며, 放送編成責任者の 자율적인 放送編成을 보장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③ <u>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u> ----- ----- ----- ----- ----- ----- -----.	第4條(放送編成의 자유와 독립) ③ ----- ----- ----- ----- ----- ----- - 이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 셋째, 김우영의원안 제4조의2제3항, 서영교의원안 제4조의2제2항은 종사자 대표가 편성위원회 위원 5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데, 종사자 대표를 추천하는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다 구체적으로 절차를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그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편성의 자율성 침해,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경영권 침해, 개정안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중복규제 소지 등을 주된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 신중검토 > (김우영·서영교 의원)

- 방송편성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 현행법에 따라 방송사업자 자율적으로 편성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의무 설치 및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 또한,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규약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방송편성책임자 제청·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종사자 대표 선정, 방송편성규약 공표, 편성위원회 설치대상 등 개정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검토가 필요한 조문이 있음

< 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 추가 : 신중검토 > (이해민·김우영·서영교 의원)

- 개정안의 재허가 심사사항으로 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규약 준수 등을 추가 심사하여 방송편성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 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규약 준수 등 위반시 벌칙을 부과되고, 또한 재허가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항목이 마련되어 있어
 -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중복규제로 작용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KBS, SBS, 채널A, JTBC, TV조선, MBN, YTN, 연합뉴스TV

등 다수의 방송사업자도 사업자의 권한 침해나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반대 등의 입장임.

<방송사업자 의견>

- **(KBS : 반대)** 편성규약 준수는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편성위원회는 인사권 등의 권한 침해와 공사에 과다한 의무를 부담할 여지.
 - 편성규약 준수 등은 추가적인 분쟁이나 노사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편성위를 통한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제청은 방송편성책임자의 공백·미교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자가 법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공사에 과다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독립성을 방해할 소지.
 - 사실상 편성위원회가 방송편성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으로 공사 사장의 본질적인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결과 초래.
 -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의 주요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편성권의 주체 또는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집행기관의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 **(JTBC : 반대)** 방송사의 자율에 따라 운영·관리해 온 편성위원회를 강제로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방송사의 자율적인 경영권을 제한, 과잉입법 여지
 - 편성규약의 준수 강제 및 재허가시 준수여부 심사는 과잉입법 여지
 - 방송편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 취지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 최소화 필요
 - 민영방송사까지 인사권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과잉입법 여지
 - 방송사마다 편성위 운영방식이 다름에도 기준을 일원화시켜 자율권 침해
 - 재허가 심사시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준수 평가는 별번력 부재
- **(MBN : 반대)**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 기준을 추가로 만들어 보도 및 제작 과정에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
- **(TV조선 : 반대)** 방송사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고 벌칙·과태료 조항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율성을 침해하고 방송사업자들의 경직성을 높이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 **(채널A : 신중검토)** 편성규약 준수의무 부과는 방송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고, 편성위원회의 방송편성책임자 선임제청 등은 방송사의 경영권 및 인사권을 제한할 우려, 방송사들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 **(YTN : 재검토)**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과다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 이중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연합뉴스TV : 신중검토)** 편성위원회 설치, 심의·의결권 부여, 편성책임자 선임 등은 과잉 입법으로 볼 수 있고, 민간방송사업자의 인사권, 경영권 등 침해 소지

○ 종합해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설치나 방송편성규약 준수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함과 동시에, 방송사업자의 인사권과 경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종사자 대표 선정절차, 방송편성규약 공표 및 편성위원회 설치 대상 등에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방통위 및 방송사업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무대상 방송사업자의 범위나 의무사항, 실효성 확보수단 등에 대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¹²⁾

12) 이와 관련해서는 편성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1호)(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 방송통신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동 개정안과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시청자위원회 관련 사항: 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법 제87조제1항¹³⁾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하고, △같은 조 제2항¹⁴⁾에 김우영의원안은 종합편성(제1호)·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제2호), 서영교의원안은 종합편성(제1호)·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제2호)·홈쇼핑PP(제3호)·SO(제4호(신설))·위성방송사업자(제4호(신설))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추가로 김우영의원안은 제87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 내·외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을 추천받거나 위촉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규정하며, 제4항을 통해 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추천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서영교의원안은 제88조제1항¹⁵⁾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SO와

13)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14)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15)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위성방송사업자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이용요금·이용약관, 채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제90조제1항16)을 개정하여 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도록 하려고 함.

- 서영교의원안은 제89조제4항을 신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둬.

<시청자위원회 관련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

구 분	현 행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시청자위를 두어야 하는 방송사업자 (§87조 ①)	1.종합편성방송사업자 2.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3.홈쇼핑PP	1. 종합편성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3. 홈쇼핑PP 4.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방식 (§87조 ②)	방송사업자가 '방통위 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종편PP, 보도전문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추천 (나머지는 현행대로) ·구성원칙 규정(공정·객관) ·자격요건,결격사유,추천기준 등 대령위임	·종편PP,보도전문 방송사업자, 홈쇼핑PP, SO, 위성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추천
시청자위원회 권한·직무 (§88 ①)	1.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2.자체심의규정, 방송 프로그램내용에 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3.시청자평가원의 선임	현행과 같음	·(신설) SO, 위성방송사업자에 설치된 시청자위에 한해 다음의 권한·직무 추가 - 이용요금·이용약관에 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16)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구 분	현 행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4.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89 ④)	-	-	·(신설) 방발기금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지원근거 규정
방송사업자의 의무(§90 ①)	·종편·보도전문방송사업자 ·홈쇼핑PP는 다음과 관련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시정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해야 함 -방송편성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	현행과 같음	·(신설) SO,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관련된 의견제시·시정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해야 함 - 방송편성 -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 - 이용요금·이용약관 - 채널 구성과 운용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홈쇼핑PP에 대하여 시청자위원회 구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 제87조¹⁷⁾는 제1항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사업자, 홈쇼핑PP에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해당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17)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¹⁸⁾에서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는 14개 분야의 단체를 규정하며, 법 시행령 제64조¹⁹⁾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는 2024년 12월 기준 종합편성(37개사), 보도전문편성(3개사), 홈쇼핑방송사업자(12개사) 등 52개사임.

18)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시청자위원 추천단체) ① 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2. 소비자보호단체
3. 여성단체
4. 청소년관련 단체
5. 변호사단체
6.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7.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8. 노동단체
9. 경제단체
10. 문화단체
11. 과학기술 단체
12. 인권단체
13. 외국인 관련 단체(단, 외국어방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방송사업자에 한함)
14. 물류·유통 관련 단체(단, 방송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2.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19)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시청자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방송사업자가 요구한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시청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한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리에 관한 계획과 처리결과를 회의 종료후 1월 이내에 시청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월간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실적을 다음 달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방송사업자>

구분	방송사업자
종합편성(37개사)	- 중앙지상파방송 3개사 (KBS, MBC, SBS)
	- 종합편성PP 4개사 (JTBC, TV조선, 채널A, MBN)
	- 지역MBC 16개사 (강원영동, 광주, 대구, 대전, 목포, 부산, 안동, 여수, 울산, 원주, 전주, 제주, 경남, 충북, 춘천, 포항)
	- 지역민방 10개사 (KNN, 티비씨, 광주방송, 대전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울산방송, G1, OBS경인TV)
	- 라디오방송 3개사 (서울교통방송, 부산영어방송, 광주영어방송)
	- 지상파DMB 1개사 (YTNDMB)
보도전문편성(3개사)	- 보도전문편성PP 2개사 (YTN, 연합뉴스TV)
	- 라디오방송 1개사 (YTN라디오)
홈쇼핑사업자(12개사)	- 홈쇼핑사업자 12개사(홈앤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신세계라이브쇼핑, 공영홈쇼핑, W쇼핑, TRN, SK스토아, NS홈쇼핑, KT알파쇼핑, GS리테일, CJ온스타일)
계(52개사)	52개사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현행법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 홈쇼핑PP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를 수용하도록 함.

○ 법 제88조제1항²⁰⁾은 제1호 및 제2호를 통해 시청자위원회가 방송편성과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해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20) 제88조(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법 제90조²¹⁾는 제1항에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 홈쇼핑PP는 앞서 제시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시정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시청자위원회가 방통위에 시청자불만처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규정하며, 제4항은 방송사업자의 처리사항 등을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해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과 관련된 김우영·서영교의원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가 가능함.

○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고, SO,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유료방송에 있어서 시청자 참여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점이 있고,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시정요구 권한을 확대하여 시청자 권

21)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 첫째, 서영교의원안 제87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사업자 중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방송사업자가 있어 조문정리가 필요해보임.
 - 서영교의원안 제4조의2제1항은 편성위원회 설치의무대상을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PP”로 규정하고 있음.
 - 서영교의원안 제87조제1항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 홈쇼핑PP, SO, 위성방송사업자로 ‘홈쇼핑PP, SO, 위성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방송사업자임.
 - 이에 따라 편성위원회 설치의무가 없는 ‘홈쇼핑PP, SO,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실제적으로는 설치의무를 부여하게 되므로, 김우영의원안과 같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로 한정하는 등 이와 관련된 조문정리가 필요할 것임.²²⁾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견도 같음.

<편성위원회, 시청자위원회 구성 관련 서영교의원안 내용>

제4조의2(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4.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4.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 둘째, 김우영의원안은 제87조제1항제4호 개정으로 SO, 위성방송사업자를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에 포함하면서, 방송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90조를 개정하지 않고 있어, 시청자위원회의 심의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법 제90조²³⁾는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시

23)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 ②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정요구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 시청자위원회가 방통위에 시청자불만처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규정하며, 제4항은 방송사업자의 처리사항 등을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해 시청자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서영교의원안과 같이 제90조제1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SO와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과기정통부 소관인 만큼 제4항 후단의 과기정통부장관으로의 통지·의무대상에 SO와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²⁴⁾

□ 이에 대해 관계 부처 및 방송사업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나, 편성위원회를 통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 이 경우 제90조제4항 후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 신중검토 > (김우영·서영교 의원)

- **현행 법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다양한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사업자에 대해 **편성위원회의가** 시청자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 **시청자위원회의의 다양성, 자율성과 독립성에도 편성위원회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시청자위원회 권한과 직무 등 : 동의 > (서영교 의원)

- **SO·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제작 지원 : 동의 > (서영교 의원)

- **현행법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PP는 의무적으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프로그램 제작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나, 중소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을 가입자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불만처리 및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로 소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김우영의원안에 대해 개정안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에 대한 수용의무 규정(제90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서영교의원안에 대해서는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편성위원회 추천으로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여 규정간 불일치가 있으므로, 홈쇼핑PP, SO, 위성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추천하

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JTBC, 채널A, 한국케이블협회 등 방송사업자는 입법을 통한 의무화보다는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방송사업자 의견>

- **(JTBC : 반대)** 시청자위원회 구성·운영은 각 방송사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과잉입법 소지를 방지하는 것이 현재의 규제 완화 정책에 부합
- **(채널A : 신중검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때,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할 수 있음. 따라서 법으로 운영기준을 강제하기보다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방송사의 독창성·다양성 보장할 필요
- **(한국케이블협회 : 반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플랫폼사업자로 시청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 조건 등을 통해 수년간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법을 통한 의무화보다는 현 수준의 운영 방식 유지 필요.

□ 종합해보면, 시청자위원회 등 시청자 권익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청자 참여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사업자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방통위, 과기부의 동의입장과 반대하는 방송사업자의 입장, 편성위원회를 통한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한 방통위와 관계 방송사업자의 신중 검토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⁵⁾

25) 이와 관련해서는 SO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5011호)(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 방송통신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동 개정안과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직원 임명동의제: 노종면의원안 제52조제2항

가. 주요 내용

- 노종면의원안은 제52조제2항을 신설하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대상은 단체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현 행	노종면의원안
第52條(職員の任免)(생략) <신설>	第52條(職員の任免)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일부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동의를 필요한 직원의 규모와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른다.

나. 검토 의견

- KBS는 주요보직자에 대하여 임명하기 전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임명동의제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9년 단체협약을 통해 ‘임명동의제’ 신설, 방송편성규약(제16조)²⁶⁾에 반영
 -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2국장을 임명하기 전 3개 노조(언론노조 KBS본부, KBS 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을 받도록 함 ‘임명동의제’를 신설.
-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임명동의제 대상 확대
 - ‘시사교양1국장, 라디오제작국장’을 대상으로 추가
- 2023년 KBS 사측, 국장 임명동의제 무효 주장

-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장 임명동의제는 인사규정, 정관,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인 만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임명동의제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

○ 2024년 1월 임명동의 없이 주요보직자 인사 단행

□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따라 규정되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에 KBS에서 운영하였던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종사자의 의견 반영을 통해 경영자 등의 부당한 압력을 반영하고 취재·보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이와 관련해 KBS는 임명동의제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고 도입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임.

<임명동의제 도입 관련 KBS 의견>

- 1) 법원은 언론사에서 직원에 대한 임명 동의가 문제된 사건에서 임명에 관해서는 사용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임명 동의는 인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 부당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카합80516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카합50154 결정).
- 2) 위법 소지가 있는 '직원에 대한 임명 동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오히려 단체협약 체결을 제약할 수 있음.

26) 「KBS 방송편성규약」 제16조(국장 임명동의) 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제5조가 정한 취재 및 제작의 규범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일부 취재 및 제작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

② 임명동의 대상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2019 단체협약에 따른다.

- 직원 임명동의제의 법제화는 경영자 등의 부당한 압력을 방지하고 취재·보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V.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1. 한국방송공사 이사 증원 및 추천주체 변경·확대: 한민수·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노종면·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이사회 정수) 현행 「방송법」(이하 “법”) 제46조제2항²⁷⁾은 한국방송공사 이사 수를 11명으로 하고 있는데, 한민수·이훈기·최민희·박민규·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황정아·노종면의원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있음.

□ (이사 추천주체) 현행법 제46조제3항²⁸⁾은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방통위는 관례적으로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을 추천해 왔음.

○ 이에 대해 각 개정안은 방통위의 추천 권한을 없애거나 다른 주체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추천단체를 변경·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추천주체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²⁹⁾

27)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28) 제46조(이사회 설치 및 운영 등)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29) 근로자단체나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은 실제로 추천단체의 수가 그 안에서 다양할 수 있지만,

① 추천주체 수 1개: 한민수·이해민의원안

- 한민수·이해민의원안은 국회가 13명을 모두 추천하며, 방통위의 임명제청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한민수의원안은 여당이 7명, 야당 교섭단체가 6명을 추천하도록 하나, 이해민의원안은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6명,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음.

② 추천주체 수 2개: 최민회의원안

- 최민회의원안은 국회 여당이 5명, 야당 교섭단체가 5명,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전문성과 보도·제작·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3명으로 함.

③ 추천주체 수 3개: 이정현의원안

- 이정현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소관 상임위 의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4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2명 포함), 시청자위원회 4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④ 추천주체 수 4개: 황정아·박민규·서영교의원안

- 황정아·박민규의원안은 추천주체가 유사하나 황정아의원안은 이사수를 15명, 박민규의원안은 이사수를 13명으로 하고 있어 추천인 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회 교

같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추천주체 수 1개로 간주함.

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5명(소관 상임위 의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5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 포함)까지는 두 안이 동일하나, 시청자위원회의 추천 인원을 황정아의원안은 2명, 박민규의원안은 1명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 근로자의 추천권한과 관련해 황정아의원안은 임직원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박민규의원안은 노동조합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서영교의원안은 국회 여당 4명, 야당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3명, 방통위 2명(위원 전원 동의 필요), 방송미디어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2명, 공사가 2명(1명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함. 또한 방통위 임명제청 없이 각 단체 개별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임.

⑤ 추천주체 수 5개: 이훈기·김우영·조인철·김현의원안

- 이훈기·김우영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비율에 따른 추천 3명(본회의 의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추천 3명(지역방송 관련 학회 1명 포함),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공사 소속 근로자 추천 3명, 방통위 추천 2명(위원 전원 동의 필요)으로 함.
- 다만, 공사 소속 근로자 추천의 경우 이훈기의원안은 추천권을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에 부여하고, 과반을 대표하는 근로자 단체가 없으면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없으면 전체 근로자 투표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는 반면,

김우영의원안은 공사 소속 직원의 투표를 통해 추천하도록 하는 차이가 있음. 또한, 김우영의원안은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며, 방통위의 임명제 청 없이 각 단체 개별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임.

- 조인철의원안은 국회 여당이 4명, 야당 교섭단체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지역방송 분야 전문가 1명 포함),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피디연합회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명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김현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7명(본회의 의결), 대한변호사협회 1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명, 한국경영자총협회 1명, 공사 임직원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함.

⑥ 추천주체 수 6개: 노종면의원안

- 노종면의원안은 국회 정당별 의석수 비율에 따른 5명, 방통위 4명(위원장 1명, 여당 추천위원 1명, 야당 추천위원 2명), 공사 노동조합 3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대한상공회의소 1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함.

<개정안별 이사회 추천단체 구분>

구분	이사회 추천단체							임명 방식
	계	국회	방통위	공사 임직원	학회	시청자 위원회	기타	
한민수 의원안	13	13 與 7, 野 6	-	-	-	-	-	국회추천 대통령 임명
이해민 의원안	13	13 의장 1, 與 6, 野 6	-	-	-	-	-	
최민희 의원안	13	10 與 5, 野 5	-	3 임직원 과반수 추천	-	-	-	방통위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
이정현 의원안	13	5 교섭단체 의석수비율	-	-	4 (지역2)	4	-	
황정아 의원안	15	5 교섭단체 의석수비율	-	3 임직원 대표단체	5 (지역1)	2	-	
박민규 의원안	13	5 교섭단체 의석수비율	-	2 공사노조	5 (지역1)	1	-	
서영교 의원안	13	7 與 4, 野 3	2 전원동의	공사 1 노조 1	-	-	방송미디어 민간단체 2	각 단체 개별추천 대통령 임명
이훈기 의원안	13	3 교섭단체 의석수비율	2 전원동의	3 근로자 단체	3 (지역1)	2	-	방통위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
김우영 의원안	13	3 교섭단체 의석수비율	2 전원동의	3 공사 직원투표	3 (지역1)	2 총국합의	-	각 단체 개별추천 대통령 임명
조인철 의원안	13	8 與 4, 野 4	-	-	2 (지역1)	-	기자1 피디1 방송기술인	방통위 임명제청 대통령 임명
김현 의원안	13	7 교섭단체 의석수비율	-	3 임직원 과반수 추천	-	-	변협 1 민변 1 경총 1	
노종면 의원안	15	5 원내정당 의석수비율	4 위원장 1, 與 1, 野 2	3 공사 노조	-	-	인권위 1 상의 1 변협 1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대해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선임 과정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치적 종속성,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³⁰⁾

○ 법 제46조³¹⁾는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이사는 “11인”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제3항에서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을 추천하여 왔음.

- 이사회는 법 제49조³²⁾에 따라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및 사

30) 이준웅(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제1분과 발제문, 2018.3.29.

31)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32)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6. 9.>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장·감사의 임명, 부사장 임명동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수직적 인사권한과 정치적 후견주의 등은 정권변화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지속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음.³³⁾

□ 개정안은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한을 변경하거나 다른 주체로 확대하여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 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각 개정안은 추천주체나 이사정원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 방송관계법안 대안 3건의 이사 추천주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 영향력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더민주)과 이사 추천주체 대부분이 친민주당 성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입장(국힘)이 대립된 바 있음.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33)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국회는 2013년에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고, 2022년에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 미디어거버넌스 개선 분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대안은 동일하게 추천주체를 국회 5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연합회 2명, 한국피디연합회 2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2명으로 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에는 이사회가 편향적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이사회는 견제·감시 대상인 특정 직능 관련 단체가 추천 주체에 포함되어 공사의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이사회의 기능을 형해화하며, 민주적 정당성 없는 단체가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을 관여·침해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음.

쟁점	21대 국민의힘 입장	21대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요구사유('24.8)
이사 추천 주체	- 추천 주체 대부분이 親민주당 성향	- 다양한 기관에 추천권을 할당하여 정치권 영향력 축소 필요	- 이사회는 편향적 구성 우려 - 공사의 경영을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 ※ 이사회는 견제·감시 대상인 직능 단체가 추천 주체에 포함 - 민주적 정당성 없는 단체가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에 관여·침해 →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리,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

- 개정안은 추천주체를 국회로 한정하거나 추천비율을 높이는 등 추천주체를 축소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거나 이사회는 견제·감시 대상이 포함되어 이사회는 기능을 형해화하는 제기되었던 직능단체를 제외하는 등 재의요구사유에 제시된

문제를 반영한 측면이 있음.

- 추천주체의 수는 여러 가치에 기반한 이익형량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가령 국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존의 정치후견주의 탈피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고, 반면 추천주체를 시민단체나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정파성 우려나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님.
- 이와 관련해서 **KBS**는 이사선임에서 민주적 정당성이나 민의의 대의성 확보가 필요하고, 노조 등의 이익단체가 이사선임에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현재 이사회에서도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추천주체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임.

<이사 추천주체 다양화 관련 KBS 의견>

- 1) 대통령에서 정한 기준이나 방통위가 선정하는 학회, 공사 임직원이나 근로자 과반 대표단체(또는 노조),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을 통해서는 이사선임에 요구되는 민의의 대의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음.
- 2) 근로자 과반 대표단체(또는 노조 등)는 그 성격상 이익단체로서 동 단체가 이사 선임에 관여할 경우, 공사 대내외적 이해관계 및 정치적으로 독립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움. 아울러, 공영방송사의 이사 추천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움.
- 3) 공사 임직원이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경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추천

이사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되지 않아 추천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노조의 관여를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4) 현재 이사회 구성에서도 전문성과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고, 특히 전문성을 확보할 다수의 이사회 전문위원들이 존재함.
- 5)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먼저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 타당함.

- 현재 개정안은 추천주체가 1개에서 6개까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와 추천주체의 민주적 정당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 방송관계법안 대안 3건의 이사 수 증원과 관련하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더민주)과 과도한 증원이라는 입장(국힘)이 대립된 바 있음.

-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대안은 KBS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였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³⁴⁾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15인으로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1명이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음.

3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쟁점	21대 국민의힘 입장	21대 더불어민주당 입장
이사 수 증원	- 21명 증원은 과도 - 공운법상 공공기관 이사는 15명 이내 원칙	- 다양성 확보 위해 증원 필요

- **황정아·노종면의원안이** 이사 수를 15명으로 하고, 나머지 개정안은 모두 이사 수를 13명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이사 정수 증원문제는 이사 추천단체의 수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KBS**는 이사정수 증원과 관련하여 이사정수 증원 필요성이 부족하며, 과도한 이사정수로 인한 비효율을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정적인 입장임.

<이사정수 증원 관련 KBS 의견>

-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가 ① 이사정수 부족으로 인해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미흡했다는 지적을 외부로부터 받은 경우가 없고, ② 이사회에 신규 업무가 별도 추가되지 않는 상황상 업무적으로도 증원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으며, ③ 과도한 이사 정수는 오히려 의사결정의 비효율과 분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이사 추천주체 변경과 정수 증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방송3법에 대해 정부가 두차례('23.12.1., '24.8.13.) 재의 요구한 점,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방송개혁위원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에서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해외 각국의 이사회 구성 및 추천주체·임명절차, 사장 임명절차 등은 다음과 같음.

구분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ARD(9개지역공영방송) ZDF(제2공영방송)	프랑스 FT
이 사 회 구 성	(BBC) 이사회 14명(4년+1년) =비상임 10명 + 상임 4명(사장을 포함한 BBC재직자)	NHK 지배구조는 (경영위원회) 의사결정기구 12명 + (집행이사회) 회장, 부회장, 이사 *경영위원회가 회장(사장) 임면, 예산, 사업 관련 계획 결정, 임원 직무집행 감독 *집행이사회는 10명 이내	(ARD) ARD 의장 및 방송대표협의회(GVK) (18명) (ZDF) 방송평의회(60명), 행정위원회(12명)	(경영위원회) 이사진 14명 = 2명(국회 소관 상임위가 부의장, 이사 임명) + 5명(국가 대표 이사) +5명(Arcom 임명) +2명(공공부문의 민주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2명의 직원 대표)
임 명 절 차	(비상임이사 5명) 이사장 1명, 민족권역 이사 4명 → 문화부 공모 거쳐 국왕 임명 (상임이사 4명 및 비상임이사 5명) BBC 이사회 내 선임위원회 추천 → BBC 이사회 임명	(경영위원회) 총리가 지역대표 8명, 분야 대표 4명(교육, 문화, 과학, 산업 등)의 위원 후보자 명단 상·하원에 제출 → 각각의 동의 → 총리 임명	(ARD 의장) 각 지역방송사 사장 중 다수결로 임명 (방송대표협의회(GVK)) 18명 = 9개 회원사의 방송평의회 장+ 운영위 장 (ZDF 방송평의회) 60명 = 주정부 16명 + 연방정부 2명 + 경제/종교/노동/언론단체 등 추천 26명 + 16개주 시민/사회인권/전문분야 대표 16명 (ZDF 행정위원회) 12명 =연방 추천 4명 + 방송평의회 임명 8명 (3/5 다수결)	경영위원은 국회 상·하원 소관 상임위의 추인(반대표 3/5 초과시 무효)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사장) 이사회가 상임이사 중 지명	(회장) 경영위원회 위원 9인(3/4) 이상 찬성으로 임명	(ZDF 사장) 텔레비전 위원회 3/5 이상 동의로 선출	(대표이사) 방송위원회가 경영위원회의 과반수 동의 얻어 선임

2. 사장후보추천위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등: 한민수·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노종면·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법 제50조제2항³⁵⁾은 KBS의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현행과 개정안의 사장임명방식 비교>

구 분	현 행	한민수·노종면·조인철의원안	최민희·김현의원안	이훈기·황정아·박민규·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
선임절차	이사회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이사회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사장추천위 추천) ↓ 이사회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사장추천위 추천 ↓ 이사회 제청 ↓ 국회 인사청문 ↓ 대통령 임명
임명제청시 이사회 의결정족수	과반찬성(1/2)	특별다수제(2/3 또는 3/5 ²⁾)	특별다수제(2/3) + 결선투표	특별다수제(2/3) + 결선투표 ¹⁾

주1) 7개 개정안 중 황정아·박민규·이정현·이해민의원안 등 4개 개정안만 결선투표 규정을 두고 있음.

주2) 노종면 의원의 경우 특별다수제 의결정족수를 3/5로 규정함.

- (사장후보추천위) 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안 등 9개 개정안은 사장후보추천위를 설치하여 국민참여로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이훈기·황정아·박민규·이해민·이정현·김우영·서영교의원

35)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②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안은 사장후보추천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최민희·김현의원안은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음.

○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한민수·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노종면·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김우영의원안 등 11개 개정안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최민희·황정아·박민규·김현·이해민·이정현의원안 등 6개 개정안은 결선투표를 통해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함.

- 한민수·이훈기·최민희·황정아·박민규·노종면·조인철·김현·이해민·이정현의원안은 사장 임명제청에 있어서 특별다수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민의원안은 추가로 이사 해임제청에 있어서도 특별다수제를 규정함. 김우영의원안은 사장 임명제청에서 이사회 의결을 생략하고 있어서 사장 면직제청에만 특별다수제를 규정하고 있음.

□ 사장임명절차와 관련하여,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임명절차	사추위구성
한민수·노종면·조인철의원안	○현행과 같으며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2/3↑)만 도입	-
이훈기의원안 [사장후보국민추천위]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추천위 구성(의무사항) ○임기만료 65일 전까지 추천위, 3명 이하 복수 추천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100명 이상 200명 이내 공개모집
최민희의원안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구성(임의사항) ○추천위, 3인 이하 복수 추천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 안건상정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100명 무작위선정

구 분	임명절차	사추위구성
황정아의원안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구성(의무사항) ○추천위, 3인 이하 복수 추천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 - 추천일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100명 무작위선정
박민규의원안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구성(의무사항) ○추천위, 3인 이하 복수 추천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 - 추천일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100명 공개모집 등
김현의원안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구성(임의사항) ○추천위, 3인 이하 복수 추천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 - 안건상정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100명 무작위선정
이해민의원안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구성(의무사항) ○추천위, 3인 이하 복수 추천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 - 추천일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특별다수제는 이사해임제청에도 적용	이사회 위임
이정현의원안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구성(의무사항) ○추천위, 3인 이하 복수 추천 ○이사회, 임명제청 - 사장임면제청에 특별다수제 적용(2/3 ↑) - 추천일 30일 이내 2회 이상 부결시 결선투표	100명 공개모집 등
김우영의원안 [사장추천시청자평가위원회]	○임기만료 80일 전까지 구성(의무사항) ○임기만료 65일 전까지 추천위, 평가점수 제출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이사회, 최고득점자 임명제청 -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 평가점수와 이사회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해 산출 - 평가위 점수는 70%이상 반영하며, 동점자는 평가위 평가점수순 선출 - 이사회 의결없이 임명제청 ※사장면직제청 시 특별다수제(2/3 ↑) 규정	150명 이상 200명 이내 출수, 공개모집 등
서영교의원안 [사장후보시청자평가위원회]	○임기만료 70일 전까지 구성하고 이사회는 평가대상후보자 선정(의무사항) ○임기만료 50일 전까지 평가위, 평가결과 제출 ○임기만료 40일 전까지 이사회, 평가위 평가점수와 면접심사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 후보자 임명제청 - 평가위 점수는 70%이상 반영	150명 이상 200명 이내 출수, 공개모집 등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선임과정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정치적 종속성,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이를 둘러싼 사내외의 갈등과 함께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 하락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적됨.

○ 법 제50조제2항³⁶⁾은 KBS의 사장은 이사회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이사의 구성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는 여당 성향 7명, 야당 성향 4명을 추천하여왔고, ‘단순다수결’에 따라 사장임명제청을 함에 따라 소수 이사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키워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들은 공사에 사장후보추천위를 설립하도록 하거나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직접 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거나,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장 선출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36)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②사장은 이사회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 다만 기존의 방송관계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장후보추천위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였다는 입장(더민주)과 사장후보추천위 구성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국힘)이 대립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재의 요구 사유에는,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사장추천위 구성·운영 및 사장 인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었음.

- 다만, 이와 관련해 개정안 중에는 선출방식(무작위 또는 공개모집), 위원의 결격사유, 추천위에서 사장 후보자의 경영계획발표, 면접,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등 평가방식과 평가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1대 및 22대 국회에서 재의부결된 대안보다 구성·운영·절차 등에 대한 부분을 법문언에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재의요구사유를 일부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임.

○ 둘째, 사장의 임명·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사장 선출에 국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더민주)과 현행법의 방식을 선호하는 입장(국힘)이 대립하였음.

쟁점	21대 국민의힘 입장	21대 더불어민주당 입장	재의요구사유('24.8)
사장추천위 구성방식	- 사장추천위 구성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 여 영향력 행사 가능	- 공영방송 사장을 국 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지 역 등을 고려	- 사장추천위 구성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포괄 위임 →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추천위 구성·운영 및 사 장 인사 초래 위험
사장 임명· 선임 절차	- 현행 방식 선호	- 사장 선출에 국민 참 여 보장	

□ 사장추천 절차와 관련된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과 유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한 방송3법에 대해 정부가 두차례('23.12.1., '24.8.13.) 재의 요구한 점, 지금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방송개혁위원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회에서 검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KBS는 이사회가 자율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임.

<사장후보추천위 관련 KBS 의견>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면서, 그 구성 방법과 선발기준 등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체제에서도 이사회가 사장후보 추천절차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사회가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과정에서 국민참여방식을 채택한다면, 개정안에서 설치하려는 국민추천위원회와 실질적인 운영상의 차이점이 없음.

3. 이사 및 사장의 자격·임기,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사항:
이훈기·황정아·노종면·조인철·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

1) 이어나 사장의 자격요건·결격사유·연임제한(이훈기·조인철·
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이사의 자격요건) 현행법은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훈기·조인철·김우영의원안은 제46조의2 신설을 통해 자격요건을 규정하려 함.

- 세 개정안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이훈기의원안과 김우영의원안이 규정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함. 다만, 조인철의원안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거나 있었던 사람”은 자격요건에서 제외한 것이 차이점임.

<이훈기·조인철·김우영의원안에서의 이사 자격요건(안 제46조의2)>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조인철의원안에서는 제외하고 있음3.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 |
|--|

○ (사장의 자격요건) 현행법은 사장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훈기·김우영의원안은 제50조제8항을 신설하

면서 사장의 자격요건으로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하도록 함.

- (결격사유) 법 제48조³⁷⁾는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데, 이훈기·조인철·김우영의원안은 제48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면서 “방송문화진흥회, EBS 또는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PP의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려 함. 법 제50조제6항³⁸⁾은 집행기관의 결격사유에 대해 제48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이는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등 집행기관의 결격사유로 함께 적용되게 됨.
- (연임제한) 법 제47조제1항³⁹⁾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연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고 있는데,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제47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사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50조제6항⁴⁰⁾은 집행기관의 임기에 대해 제47조를 준용하도록 하므로, 이는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등 집행기관의 연임제한으로 함께 적용하게 됨.

37)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제50조(집행기관)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9)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0) 제50조(집행기관)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은 이사와 집행기관의 임기와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법 제47조⁴¹⁾는 이사의 임기, 제48조⁴²⁾는 이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제6항⁴³⁾은 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해 제47조·제48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와 집행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나 임기보장 등의 규정은 없음.

- 이사와 집행기관의 결격사유는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②정당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④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41)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 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42)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제50조(집행기관)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⑤대통령선거후보자 당선을 위하여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어나 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있는 이훈기·조인철·김우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방송·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이어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의적 임명을 방지하고, 선임의 전문성·투명성·정당성에 대한 제고가 가능한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이사 및 집행기관의 결격사유로 ‘방문진, EBS, 종편·보도전문PP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는 이훈기·조인철·김우영의원안은 이사 자격제한요건을 강화하여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의 특성과 공익을 고려하되,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으로⁴⁴⁾, 공영방송의 독립성 제고와 직업선택

44)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최신 결정례를 살펴보면,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

의 자유 등에 대한 가치 형량을 통해 적정한 범위나 기준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⁴⁵⁾

□ 다음으로, 이사 및 집행기간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에 대해서는, 연임을 지속해 온 이사의 경우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이사선임을 제한하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양산할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2) 신분보장 등(이훈기·황정아·노종면·이해민·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사장 임기보장) 황정아·노종면·이해민의원안은 제50조제7항을 신설하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사장의 임기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 사장의 해임사유는 「방송법」에 따른 결격사유나 회계부정이나 고의·중과실로 공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심신장애

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에 대해 공무원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헌재 2024.7.18. 선고, 2023헌마460)

45) 참고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결격사유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추구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704호)가 우리 위원회 방송통신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으로 이와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로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한 경우 등이며, 다른 안과 달리 이
해민의원안은 「방송법」 또는 「방송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음.

<황정아·노종면·이해민의원안의 사장 해임사유(안 제50조제7항)>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6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집행기관 결격사유)2.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방송사업자 결격사유)3.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p>※ 이해민의원안에서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p> <p>(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p> |
|---|

○ (이사·집행기관의 직무독립과 신분보장) 이훈기·김우영·서영

교의원안은 안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직무
상 독립과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음.

- 안 제53조의2제1항은 이사 및 집행기관이 외부(이훈기의원안)
또는 내·외부(김우영·서영교의원안)로부터 임기 중 직무수행
관련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안 제53조의2제2항은 이사 및 집행기관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
지하는 내용임.
- 안 제53조의2제3항은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사 및 사
장’(이훈기·김우영의원안) 또는 ‘이사 및 집행기관’(서영교의원
안)이 자격요건 미달,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훈기·김우영·서영교의원안의 직무상독립과 신분보장(안 제53조의2)>

구분		이훈기의원안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직무상 독립 (제1항)		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간섭 X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지시·간섭 X	
정치관여 금지 (제2항)		이사 및 집행기관의 정치활동 관여 금지		
신분 보장 (제3항)	대상	이사 및 사장	이사 및 사장	이사 및 집행기관 (사장, 부사장, 본부장, 감사)
	면직 사유	1. 제13조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방송사 업자 결격사유) 2. 제46조의2 및 제50조 8항에 따른 자격요건 을 상실하는 경우 (이사·사장 자격요건) 3. 이사가 제48조제1항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집행기관 결격사유)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 하여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 게 되거나 불가능하 게 된 경우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 득을 취한 경우	1. 제13조제3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방송사 업자 결격사유) 2. 제46조의2에 해당하 는 자격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것으로 확 인된 경우 (이사·사 장 자격요건) 3. 제48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집행기관 결격사유) 4.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의 운영에 지장 을 초래한 경우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 게 되거나 불가능하 게 된 경우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사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 득을 취한 경우	1. 제48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 집행기관 결격사유) 2. 장기간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검토 의견

□ 이어나 사장 등에 대한 임기를 보장하고 직무상 독립⁴⁶⁾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해임을 방지하고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라 최종 부결된 제22대 국회 과방위에서 의결된 방송법 대안은 사장 임기보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대통령 재의요구사유가 제시되었음.

- 대통령 재의요구에 따르면, 사장임기보장은 해임사유가 한정되어 공영방송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유를 포괄하지 못하여, 도덕성의 상실이나 법 위반행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여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공사의 공적책임 실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것을 사유로 제시하고 있음.

46) 현재 KBS는 방송편성규약 제4조에서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등 독립성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KBS 방송 편성규약」 제4조(독립성의 보장) ①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의 압력은 물론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과 방송 종사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② KBS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 이와 관련해 KBS는 개정안에서 해임사유로 제시하는 사항은
현행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
해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에 해임사유를 명시한다고 하
더라도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사장 및 이사의 임기보장 관련 KBS 의견>

- 명시한 사유 중 ‘방송법상 이사 및 사장 결격사유’(제13조제3항, 제48조제1항)는 현행 방송법상 결격사유를 그대로 기재한 것이 불과하고, 그 외 회계 부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도 방송법상 규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반적 해임사유에 해당함. 따라서 명시한 사유를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해임 사유의 명확성이나 구체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님.

-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한국투자공사의 사장·이사·감사 등 임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제23조가 있음.

< 신분보장 입법례 >

「한국투자공사법」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영위원회의 해임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때

- 한편, 이사 및 사장(이훈기·김우영의원안) 또는 이사 및 집행기관(서영교의원안)의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하는 안 제53조의2

제2항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사 및 집행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위해 ‘이사의 정치 참여 금지 조항’ 등을 이사회 운영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⁴⁷⁾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舊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문제는 언론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지위에 기초한 활동을 인해 발생 가능한 것이므로, 언론 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⁴⁸⁾
- 그러나 공영방송의 이사 및 경영진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며, 방송사 전체의 운영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개별 언론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법적, 도덕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치활동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현행법은 이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고려해 결

47)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천영식 이사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를 규탄한다!」

(<http://www.kbsun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197>)

48) 2016.6.30. 선고 2013헌가1

격사유에 정치 활동과 관련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대강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동 개정안들은 제106조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이사회 회의 비공개사유 축소, 회의록의 작성·보존·공개 등 (김우영·서영교의원안)

가. 주요 내용

-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이사회의 회의공개 의무를 규정하는 제46조제9항을 개정하여, 이사회 비공개 사유 중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상에서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제외하였음.
-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이사회가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⑧ (생략) ⑨ 이사회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공개하면 <u>개인·법인</u>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생략) <신설> <신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⑩ (생략) ⑪ ----- -----. ----- ----- -----. 1. (현행과 같음) 2.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제외한 개인----- ----- ----- 3. (현행과 같음) ⑫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이사회회의 회의록은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⑬ 제1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⑧ (생략) ⑨ ----- -----. ----- ----- -----. 1. (현행과 같음) 2.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제외한 개인 및 법인·단체의----- ----- ----- 3. (현행과 같음) ⑩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나. 검토 의견

□ 제19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2014.5.28.)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의 공개원칙을 규정하였으나, 회의록 작성 기준이 없고 비공개 인정사유가 포괄적이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⁴⁹⁾

- 법 제46조제9항⁵⁰⁾은 이사회 회의 공개원칙을 규정하면서,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KBS 이사회는 안건상정 후 심사에 앞서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식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최근 ‘제27대 사장 지원자 면접심사 및 사장 임명제청’와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1091차 임시이사회(2024.10.23.))을 살펴보면, 이사회 토론 끝에 면접심사는 공개로 하고 그 이후 절차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였음.
- 이사회 회의록과 관련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KBS는 2018년부터 자율적으로 공개 안건에 한해 이사회의 의사록 및 속기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⁵¹⁾에 공개하고 있음. 다만, KBS 이사회가 때때로 ‘요약된 의사록’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공개가 이루어지

4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정책 제안서」, p.43, 2018.8.

50) 제46조(이사의 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1) <https://about.kbs.co.kr/index.html?sname=organization&stype=directors#none>

지 않는다는 지적이 과거에 있었으며,⁵²⁾ 2018년 전까지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KBS이사회 사무국에 가서 열람하는 식으로 운영된 바 있음.⁵³⁾

□ 개정안은 이사회 회의 공개를 강화하고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의 투명한 방송정책 운영과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개정안은 KBS 이사회 회의 비공개 사유 중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개하면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제외한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여, 개인의 명예훼손 등 비공개 사유를 축소함으로써 회의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고자 하는 취지임.

○ 개정안은 KBS 이사회가 회의록을 속기 및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회의 및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이사회

52) 미디어스(권순택), 「KBS이사회,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에 ‘요약본’만」, 2014.9.23.

미디어오늘(강성원), 「떨고 있나? KBS·MBC 이사회 속기록 공개 의무화」, 2016.10.31.

53) 미디어오늘(장슬기), 「KBS·MBC·EBS 이사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연합뉴스에만 없는 것」, 2022.6.14.

의결로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다만, 이에 대하여 **KBS**는 공사, 이사 및 집행기관에게 헌법상 인격권 등이 있고, 개인과 비교하여 차별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사 및 집행기관의 헌법상 권리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임.

<이사회 비공개 사유 제외 관련 KBS 의견>

- 법인도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고, 이사 및 집행기관도 자연인으로서 헌법상 인격권 등이 있으므로, 개인과 비교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을 차별할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음.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에도 이사회 회의를 공개할 경우, 이사 및 집행기관의 헌법상 권리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참고로,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사립학교법」 등에서는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어나 임원 등을 특정하여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 등의 이익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공익이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사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사립학교법」 상 비공개사유 >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 ② 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VI. 별 칙: 김우영·서영교의원안 제106조

가. 주요 내용

- 김우영의원안과 서영교의원안은 안 제106조를 통해 편성위원회, 방송편성규약, 이사회 회의(록)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현 행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第106條(罰則)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u><신 설></u>	第106條(罰則) ① ----- ----- ----- ----- -----.	第106條(罰則) ① ----- ----- ----- ----- -.
1. 第4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u>放送編成規約</u> 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한 者	1.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u>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u> 1의2. ----- <u>방송편성규약</u> 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방해하거나 <u>방송편성규약</u> 을-----	1. 제4조제3항에----- <u>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u> 1의2.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u>방송편성규약</u> 을 <u>공표하지 아니한 자</u>

현행	김우영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신설>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신설>	1의4.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1의4.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한 자
<신설>	1의5.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자	1의5.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2.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제46조제11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9항을 위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신설>	8. 제46조제12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10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신설>	9.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한 자	9. 제5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법 제106조제1항은 「방송법」 상 의무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규제 및 외국자본 지분 제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인·허가를 얻은 경우와 변경 인·허가를 해태

한 경우,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됨.

제10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포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은 방송편성규약 준수, 편성위원회 설치나 의결사항 미이행, KBS이사회의 회의(록) 비공개, KBS이사 및 집행기관의 정치활동 관여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김우영·서영교의원안의 별칙 신설내용>

다음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1. 편성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편성위원회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 자
2.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3.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방해하는 자 (최우영의원안만 규정)
4.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6. 편성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자 (서영교의원안만 규정)
7. 편성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비공개사유 외) KBS이사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9. (비공개사유 외) KBS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0. KBS 이사 및 집행기관 중 정치활동에 관여한 자

□ 다만, 별칙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제재수단의 활용 가능성이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다른 법률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별칙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의 내용은 방송사업자가 제정·공표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처벌 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해서는 별칙에 방송

편성규약의 내용 중 법률로 특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 처벌 대상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임.⁵⁴⁾

- 둘째, 회의나 회의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한 경우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움. 가령 공공기관이나 사립학교 이사회의 회의 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의 경우에서도 직접적인 벌칙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함. 따라서 벌칙 규정을 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처벌 대상 위반행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방해한 자, 방송편성규약의 제·

54) [참고: 입법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개정을 방해하는 자, 편성위원회 운영을 방해한 자, KBS 이사 및 집행기관 중 정치활동에 관여한 자 등은 그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권한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함.

- **방송통신위원회**: 벌칙 신설은 방송 운영의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KBS**: 개정안이 신설한 사유들이 형사벌로 규율할 사안인지 의문이고, 과잉처벌 사례가 양산되거나 상당한 법적분쟁과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며, “정치활동에 관여” 부분은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
- **MBN**: 과도한 제재 기준을 추가로 만들어, 보도 및 제작 과정에서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
- **TV조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미 방송법상에 벌칙규정을 명시하고 있음
- **YTN**: 보도전문편성사업자의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과다하여 사업자의 방송편성의 자유 및 독립을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이중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지에 대

한 신중함 검토가 필요

- **연합뉴스TV**: 노사가 공동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관련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신설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볼 수 있고, 사업자의 인사권, 경영권 침해소지
- 추가로, "정치활동 관여 금지"는 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대강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동 개정안들은 제106조 벌칙규정을 개정하여 정치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6
